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5

발의연월일: 2020. 9. 16.

발 의 자:진성준ㆍ이용우ㆍ김윤덕

전혜숙 · 강선우 · 강병원

홍성국 · 김회재 · 이해식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한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사용자"를 "사용자(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로, "사항"을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③ 부당행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
행 등) ① (생 략)	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2
고용하고 있는 <u>사용자</u> 는 관계	사용자(법인인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원을 포함한다)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u>사항</u> 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	
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그	<u>는 부당한 사항</u>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	
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	
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
	고 등)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
	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

고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신고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부당행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